

영국판례 1

**고의없이 송고된 허위내용의 기사를
편집자가 간과하여 보도한 경우
신문경영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REGINA v. EVENING STANDARD CO. LTD.
[1954]1 Q. B.578

판결요지

어떤 사건이 심리 되기 전에 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재판 중에 있는 형사피고인에 관한 경력 또는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허위이거나 잘못된 사실의 보도는 비록 그러한 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법정모욕사건으로서 약식재판권(summa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법원이 보호하고 예방해야 할 「정당한 사법절차」(the due course of justice)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기자와 별도로 신문사에게는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의 원칙(the principle of vicarious liability)이 적용된다. 취재기자의 과실로 인하여 살인사건의 재판에 관한 London Evening 지의 보도기사가 그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선의의 편집권에 의하여 발행되었는데, 이 보도는 재판에서 전혀 진술되지 않은 부정확한 것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극도로 편파적인 한 증인의 증언을 근거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그 보도는 당한 사법절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취재기자뿐 아니라 편집자와 신문경영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취재기자는 정당한 사법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 편집자에게도 어떤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으며, 법원은 취재기자에게는 별도의 벌금형을 과하지 않고 그 경영주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차하기로 한다.

사실의 개요 및 재판의 경과

압류영장의 신청.

1954년 2월 23일, 한 형사피고인이 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Chelmsford 법원에 기소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체포되기 훨씬 전에 죽었고, 그 시체는 피고인의 다른 물건과 함께 한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많은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의 부인이 사라진 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인정의 이유로서 적시하였다. 그 결과 Briggs 양과 Darmody 부인이라는 두 사람의 증인이 소환되었다.

Briggs 양은 피고인이 그녀에게 자신은 미혼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Darmody 부인은 피고인이 그녀에게 자신은 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날 저녁 Chelmsford 에서 판매된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지의 최종 저녁 특별판 첫 페이지에는 큰 머릿기사로 「트렁크 재판」, 「구혼스토리-남편이

기소되었음」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머릿기사 아래에는 「Evening standard 기자, Chelmsford, 화요일」이라고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계속되었다.

「Spitalfields, Norwich 에 사는 Gertrude Darmody 부인은 이곳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내살인혐의로 기소된 그 사람이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 후에 전에 만난 동네술집에서 다시 그를 만나 나는 그에게 그의 군대봉급증명서 (army pay book)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뒷 페이지에는 『형사피고인, 나에게 구혼을 하였다』라는 제목을 실었다.

그러나 Darmody 부인은 그리 한 증언을 한 적이 없었다. 사실은 Briggs 양이 예심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그의 아내를 살해한 후에 그녀에게 그와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riggs 양이 증언을 하였을 때 재판관은, 배심원의 불참 하에 토의를 거쳐, 그녀의 그러한 진술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로 편파적인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따라서 Briggs 양의 위 증언은 본 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재판전의 예비절차에도 참석하였고, 본 재판의 심리과정에도 참석하여 취재한 조지 포리스트 기자에 의하여 런던에 있는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사 본사에 전화로 송고된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그 기사는 Briggs 양의 증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의 앞부분의 기사를 전화로 송고하기 위하여 법정을 떠났으며, 그녀의 증언이 끝난 직후에 법정에 다시 돌아왔다.

이 기사는 다음날 아침에 판사에 의하여 언급되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기사를 보지 못한 사람만으로 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까닭에 새로운 공판을 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로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석방되었다.

법무장관은 법원에 이브닝 스탠다드 신개사와 그 편집자 그리고 취재기자에 대한 압류영장(a writ of attachment)의 발부를 신청하였다. 편집자는 선서진술서(affidavit)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 기사는 10년 동안이나 신문사의 임원에 의하여 신뢰를 받아온 기자이고, 지금까지 기사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어떠한 비난도 받음이 없이 많은 재판과정을 보도해 왔으며, 그 자신 스스로가 매우 유능하고 신뢰할만한 기자임을 입증하여왔다. 그는 그 기사가 완전히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편집자와 경영주는 그 기사를 선의로 게재하였다.」 그런데 그 기사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범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선서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Darmody 부인이 피고인이 그녀에게 결혼제의를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는 그의 수첩에다 「marriage, yes」라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Lord Goddard 판사의 판시

이 사건에서 법무장관(Solicitor General)은 「이브닝 스탠다드」지가 2월 23일자에 부인살해혐의를 받은 한 남자의 재판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는 문제에 관하여 「이브닝 스탠다드」지의 편집자,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사 그리고 취재 기자인 조지 포리스트에 대한 압류영장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살인혐의에서 무죄가 되었다는 사실은 문제 밖의 일이다 .

다행하게도 위 기사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본건은 재판의 결과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논점이 있기 때문에, 위 재판의 결과는 법원이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하여 형사피고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특수하고 가장 비난받을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법정에 참석한 기자의 취재방식은 법정에서 약간의 취재를 한 후에 런던에 이 기사를 전화로 송고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나가고, 그 후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서 취재를 계속하고, 또다시 나가서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된다. 본 법원으로서는 신문사에 대해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할 의도는 없다. 더군다나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론할 의도는 더욱 없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취재방식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었던가를 아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취재기자는 아주 적은 양의 취재노트만을 한 후 공중전화박스로 가서 그의 위 재판에 대한 기억과 취재노트만을 근거로 하여 전화 송고한 것이다. 그는 Briggs 양이 증언을 할 때 법정에 있었다. 그녀는 증언을 시작하였고, 잠시 후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 다음에야 판사는 이에 개입하였고, 곧 판사와 변호인들 사이에, 증언의 채택여부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이 취재기자에게는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법정을 떠나서 런던 본사에 전화를 했고, Briggs 양이 증언을 끝낸 후에야 법정에 돌아온 것이다.

그의 전화송고 내용 중 「Briggs 양 다음의 증인은 Spitalfields, Norwich 55 번 가에 사는 Gertrude Darmody 부인이다. 그녀는 지난해 9 월 피고인인 Kemp 씨를 그곳의 한 술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라는 부분과 「그는 미혼이라고 나에게 말하였다」 라는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같은 술집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 결혼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나는 그에게 그의 군대봉급증명서(army pay book)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라는 부분 가운데 「내가 그에게 그의 군대봉급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라는 부분은 정확한 말이지만, 「내가 같은 술집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 결혼을 제의하였다」 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부정확한 것이다. 취재기자는 그에 이어서 Darmody 부인의 증언 중 나머지 부분을 송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재판이 끝난 후에 퇴정한 배심원들을 포함한 Chelmsford 의 일반 사람들은 이 신문을 사보게 되었고, 실제로는 결혼제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증인에게 결혼을 제의하였다고 되어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어떻게 이처럼 부정확하고 극도로 편파적인 기사내용이 공표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자가 잘못 들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잘못 청취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취재기자는 재판정에 참석하고 있었다. 법정을 들락날락하여 증언의 일부는 들었으나 다른 증언부분은 아마도 듣지 못한 그 취재기자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마치 치안판사 앞에서 증언의 전부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법정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우선 그가 전화로 런던 본사에 송고한 Briggs 양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나, 그는 Darmody 부인이 「나는 그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다」 는 증언을 하는 동안 법정에서 있었으므로, 그는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결혼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부정확하고, 가장 부주의하게도 그것을 전화로 송고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법원에 제소되기에 합당한 문제이다. 신문이 이와 같이 재판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원이 행사하는 재판권의 성격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법정모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러한 법정모욕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이 재판되기 전에 그 사건에 관한 논평을 한 기사 또는-본 법원이 약 5년 전에 다루었던 Daily Mirror(Rex v. Bolam, ex parte Haigh)(1949)93 S. J. 220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재판중인 피고인의 이력에 관한 기사, 그리고 모든 허위보도기사가 정당한 사법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정모욕죄의 근거는 그러한 기사들이 정당한 사법절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서는 1742년에 본 법원에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한 초기판례 중의 하나인 저명한 Lord Hardwicke L.C. 판사의 The St. James's Evening Post(1742) 2 Atk. 469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내용을 출판한 편집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책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약식재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Lord Hardwicke 판사는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심리가 다 되지 않은 재판사건에 있어서 소송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내용의 공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절차가 잘못 보도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법재판상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다(물론 그것은 이 사건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소송사건이 최종적으로 심리되기 전에 사건당사자로서 관계된 사람들에 관하여 일반대중의 마음 속에 편견을 갖게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다. 법률상의 구제책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약식재판으로 다룰 수 없다는 신문사측의 주장을 배척한 후에, 그는 다른 종류의 모욕죄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는 또 「소송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에 관하여 일반 사람들이 편견을 갖도록 한 점에서 그러한 것은 역시 법정모욕에 해당한다. 당사자들 모두에게 안전하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재판의 진행을 확실하고 순수하게 유지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본 법원이 200년 이상이나 유지하여 온 재판권의 원칙으로서, 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부당한 정보의 공표, 또는 심리 될 예정이거나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부당한 정보의 유출, 또는 재판상 소송절차에 관한 허위보도나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관여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본 법원은 근래에는 더욱 자주있는 일이지만, 오로지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경우에만 본 법원의 약식재판권이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해왔다. 그리고 본 법원은 실제적으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압류신청을 기각하여 왔다.

본 사건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이다. 그러나 Rex v. Editor of the New Statesman(1928) 44 T. L. R. 301, 303 사건에서 Lord Hewart 판사가 말한 것처럼, 법원이 과하는 형벌이나 제재의 정도는 각각의 특수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만약 어떤 논평이 아무런 근거없이 신문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공공매체에 보도된다면, 본 법원은 중한 벌금을 과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있는 Daily Mirror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형을 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건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에 대해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취재기자가 의도적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본사에 전화송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책임있는 언론인으로써, 그는 허위정보의 보도를 하는 것이 자신을 중대한 곤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브닝 스탠다드지」의 취재기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보냈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편집자에게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비록 보도가 형사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가 법정모욕죄 성립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본건 신문보도가 피고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동지의 발행인 Hartley Shawcross 경은, 독자들은 본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편집자와 신문경영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하여 판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신은 소위 말하는 사용자책임은 법률상 그들에게 통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은 취재기자의 실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원에 호소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Regina v. Payne(1896) 1. Q. B. 577; 12T. L. R. 321 사건에서 Lord Russell 판사와 Wright 판사가 말한 것과 상반되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두 판사는 법원은 출판물이 사법절차에 영향을 줄 의도였거나,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영향을 줄 것 같은 각 경우에는 법원이 관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Wright 판사는 「영향을 줄 것 같은」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Lord Russell 판사는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위에 언급한 바 있는 St. James's Evening Post 사건에서, 발행인(신문경영주)은 신문의 성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문과 팜플렛을 인쇄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므로 발행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Lord Hardwicke 판사는, 「비록 신문발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은 신중하고도 주의깊게 그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경우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것임을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상의 원칙이며, 나는 항상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는 엄격한 법률원칙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이제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형을 부과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실질적인 벌금형을 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이 사건이 과실과 실수 등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헤아릴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집자에게는 어떤 벌금형도 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그는 취재기자가 그에게 전화로 보고한 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용자책임의 원칙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잘 수립되어 있으며 고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천명하였다. 죠지 포리스트 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하여는 우리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정직한 실수를 범하였다. 즉 그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본건에서 문제된 기사를 보낸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건강이 나쁜 상태 혹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는 그의 정신이 혼돈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위험성에 관하여 그가 의미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죠지 포리스트 기자에게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다만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사에 대하여 국가에 1,000 파운드의

벌금과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선고하고자 한다. 벌금은 48 시간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피고에게 법정모욕죄를 적용하되,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사에게만 1,000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